

제274회 강서구의의회 임시회  
행정·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

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(수시분) 동의안  
**검 토 보 고 서**



2020. 9.16.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의회 행정·재무위원회

#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(수시분)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

2020년 9월16일  
전문위원 배 금 택

## 1. 회부경위

- 가. 의안번호: 2020 - 74
- 나. 제 출 자: 강서구청장
- 다. 제출일자: 2020년 8월19일
- 라. 회부일자: 2020년 9월 9일

## 2. 제안이유

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」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중요재산의 취득을 결정하기 전 공유재산 관리계획(수시분)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### 【 재산의 취득 】

- 화곡동 생활SOC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설 ..... 1,975백만원
  - 위 치: 가로공원로76길 39(화곡동 366-47)
  - 취득내역: (매입) 토지 1필지 253.8㎡, 건물 1동 550.59㎡

## 4. 관계법령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
-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」 제10조

## 5. 검토의견

- 「화곡동 생활SOC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설」의 건은
  - 화곡동 주택밀집지역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자 하는 것으로
  - 위치는 화곡동 366-47 이며
  - 사업기간은 2020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임
  - 사업규모는 대지 253.8㎡, 평면식 주차장이며
  - 소요예산은 총 19억 7,500만원으로 매입비 15억 3,800만원, 신축 공사비 및 용역비 등 4억 3,700만원이며 시비 100%임

## 6. 종합의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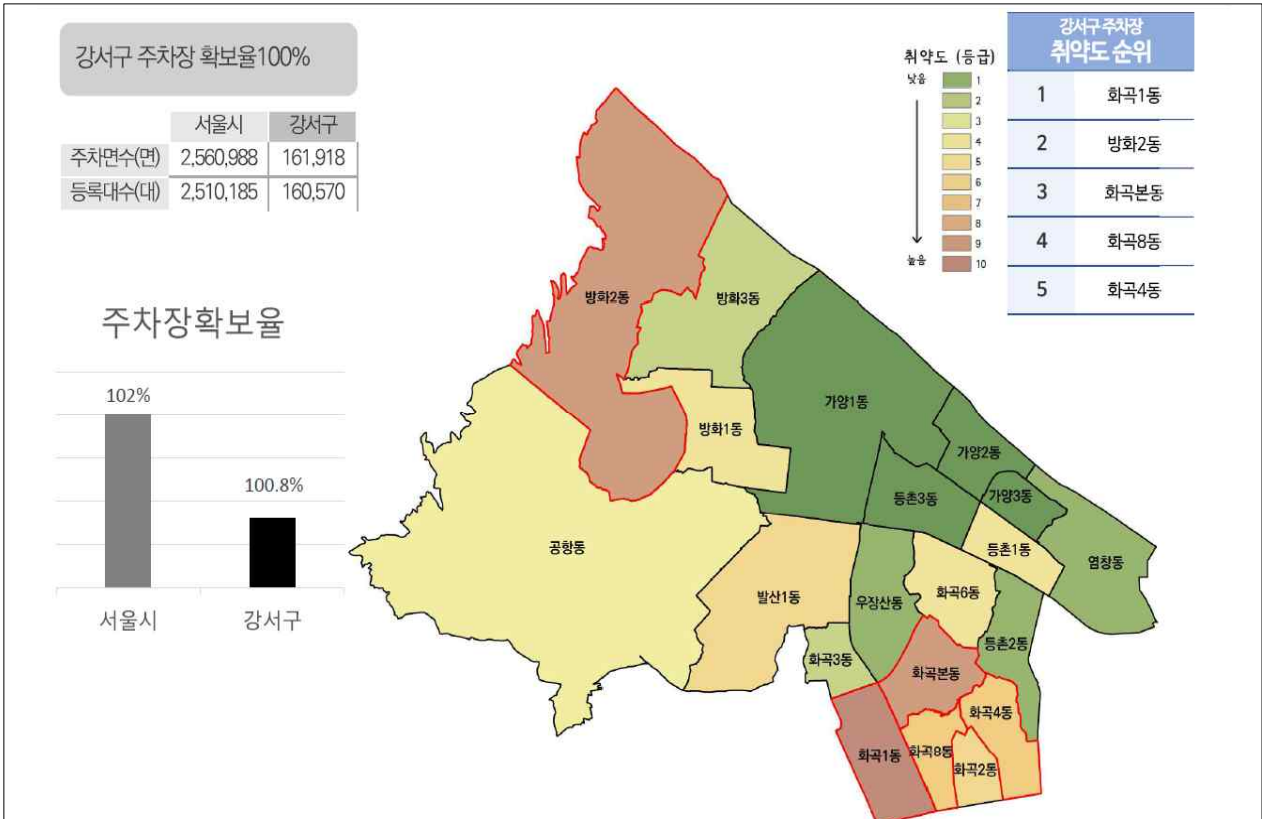
-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정 금액 이상의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
- 화곡동 \* 생활SOC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설 건은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는 사업으로
  - ※ 생활SOC(사회간접자본) : 사람들이 먹고, 자고, 자녀를 키우고, 노인을 부양하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필수 인프라를 의미

- 화곡1동은 만성적인 주차난으로 주민 불편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특히 서울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에서 제공한 ‘10분동네 생활 SOC공급 3개년 계획수립 용역’ 결과 강서구 20개 행정동 중 화곡1동이 주차장 취약 1순위로 나타나는 등 주차여건이 열악하여
  - ※ 10분동네 생활SOC공급 3개년 계획수립 관련 자료 : 참고1
-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강서구는 ‘2019년 서울시 10분 동네 생활 SOC 시범사업’에 신청하여 선정되었고 부지 매입 후 10면 내외의 주차면수를 갖춘 평면주차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임
- 이번 사업으로 저층 주택밀집지역인 화곡1동에 부족한 공영 주차장을 확보하여 지역의 주차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

# 참고1

# 관련자료

## 강서구 주차장 현황



※ 서울시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 ‘10분동네 생활SOC공급 3개년 계획수립용역’ 중 발체

## 사업대상지



**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( 약칭: 공유재산법 )**

**제10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·변경 등)**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(이하 "관리계획"이라 한다)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,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)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·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출 절차는 「지방자치법」 제46조에 따른다.

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,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「지방자치법」 제3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·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.

**□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**

**제10조(공유재산 관리계획)**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구청장은 구의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때도 또한 같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재산관리총괄 전담부서에서 작성한다. 다만, 특별회계 소관재산의 관리계획은 재산관리총괄 전담부서의 협조를 얻어 특별회계관리 전담부서에서 작성할 수 있다.